

의안번호	2219824
의 퇴 인	김미애의원
회 답 일	2026. 8. 25.
추계번호	26C3381

경제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6억 7,000만원(연평균 1억 3,4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70	-	-	-	-	70	14
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실시(안 제6조)	300	-	-	300	-	600	120
추가재정소요	370	-	-	300	-	670	134

주: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	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(실태조사)	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의 분포·교육·고용·소득·주거·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8조(개인별 지원계획)	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9조(교육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기초학력 보장법」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경계선지능인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0조(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책 및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경계선지능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6	안 제11조(사회적응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사소통·가사·금융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2조(업무의 위탁)	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1. 「기초학력 보장법」 제10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 2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	○	○ 교육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2	안 제6조(실태조사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3	안 제8조(개인별 지원계획)	×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 및 고용 촉진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직접 또는 위탁 실시하며, 의사소통·가사·금융 등에 관한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○ 그러나, 개정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되어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대상자 범위 등을 알 수 없고, 이에 지원 단가 및 지원자 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○ 참고로, 교육부는 현재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 대상 학습지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 (2026년 초등 어휘력 2종 및 초등 수리력 2종 개발을 위해 특별교부금 4억원 편성) ○ 또한, 고용노동부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구직기술 습득 지원 등의 직무 기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을 2026년 신설함 (2026년 예산 2억 6천만원)
4	안 제9조(교육 지원)	×	
5	안 제10조(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)	×	
6	안 제11조(사회적응 지원)	×	
7	안 제12조(업무의 위탁)	×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서는 안 제5조 및 제6조의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 -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어 추계대상에서 제외(위 ‘재정수반별 추계 여부’의 [표] 참고)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교육부의 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교육부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5년 주기로 ‘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’을 수립하고 있음
 - 제6차 계획(2023~2027) 수립을 위하여 2021년 「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기초 연구」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수행함(연구용역비로 약 7천만원 소요)
 - 본 추계서는 교육부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
- 추계결과,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첫 해인 2028에만 7천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

[표 2]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70	-	-	-	-	70	1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실시(안 제6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조사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2024년 보건복지부는 「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」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므로, 동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 - 「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」 연구용역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실시하였고, 소요 예산은 약 3억원¹⁾
 - 2028년부터 3년 주기로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되, 추계기간 연구용역 단가(3억원)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억원(연평균 1억 2천만원)으로 추계

1) 실제 연구용역비로 2억 7,273만 7,270원이 소요되었으나,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된 경상경비 소요 등을 감안하여 본 추계서에서는 근삿값인 3억원의 단가를 적용함

[표 3]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							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실시 (안 제6조)	300	-	-	300	-	600	1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